

2024년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목 차

I	개 요	
1.	추진배경	1
2.	지원개요	1
3.	업무 프로세스	3
II	대상자 신청 및 선정기준	
1.	상담 및 신청	4
2.	보장의 단위	5
3.	선정기준	6
III	조사 및 보장결정	
1.	조사 원칙	7
2.	소득 조사	8
3.	재산 조사	9
4.	부양의무자 조사	10
5.	보장결정	11
IV	근로능력 판정 및 자격관리	
1.	근로능력판정	11
2.	근로능력 변경처리	12
V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1.	구성 및 운영	13
2.	위원회 기능	13

일 러 두 기

VI 급여의 실시

1. 급여의 종류	14
2. 급여별 세부내용	14
3. 급여의 지급	15
4. 급여의 변경·중지	16
5. 계좌 관리	16

VII 자격관리

1. 변동 및 사후관리(재조사)	17
2. 근로능력가구의 사후관리	18
3. 재신청 도래자에 대한 처리방안	19
4. 보장비용 환수	20

VIII 서 식

1-1.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신청서	22
1-2.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동의서 (재신청, 재조사)	23
2. 해산·장제급여 신청서	24
3. 전북형 기초생활보장급여 통지서 (결정·변경·중지)	25
4. 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서	27
5.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실태조사서	28

IX 부 록

전북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경과	29
-----------------	----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기준에 부적합한 비수급 빈곤계층 중 신청일 현재 전북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동 지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다른 부분을 중심으로 기술했으며 동 지침에 기술되지 않은 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내용을 참고하여 업무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신청 및 조사과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동일하며, 조사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부적합한 자에 대해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를 다시 판단하고, 아울러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재조사 등으로 중지된 자도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 수급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 국민기초보장수급자가 확인조사 등으로 국민기초는 중지되나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으로 변경 가능한 세대는 관리팀에서 직권으로 자격변경하고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신청서 작성·제출을 안내하며 제출서류는 조사팀에서 보관합니다.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며, 맞춤형복지(생계·의료·주거·교육)대상자와 긴급복지지원 등 생계급여 관련 타 지원과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규 신청자의 민원 처리기한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일을 기준으로 60일(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수급자 여부 결정이 있는 후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30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전북형 기초보장제도 비교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건복지부)	전북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	대상	○ 대한민국 국민	○ 세대주가 전라북도 거주 1개월 이상인 가구
	소득·재산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 (가구소득평가액+재산의소득환산액)이 급여종류별 선정 기준중위소득 이하 ※ 생계30%, 의료40%, 주거47%, 교육50% ※ 재산의소득환산율(월) · 주거용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	○ 소득: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13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34백만원 이하 ※ 재산의 소득환산율 미적용
부양의무자 선정 기준	소득·재산 기준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단, 고소득(연 1억원 초과) 또는 고재산 (9억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 제외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폐지 ※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4인이하 월834만원, 5인이상 885만원)인 경우 지원 제외
급여종류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	○ 생계급여 ○ 해산, 장제급여
급여지원 방식		○ 보충급여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1인 가구 최고급여액 : 623,368원	○ 정액급여 ※ 소득구간별, 가구규모별 기준액 ○ 생계급여 1인 가구 최고급여액 : 320,900원
업무절차		○ 신청→조사→결정→급여제공→사후관리	○ 기초수급자 신청 → 조사 → 결정 → 탈락자의 전북형 수급자 결정 → 급여제공 → 사후관리
전산 시스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확인조사		○ 복지부 자료를 통한 조사	○ 선정 후 1년 도래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재신청을 통한 조사
근로 능력자 관리		○ 조건부 수급자 등으로 관리	○ 한시보호 6개월

2024년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내용

□ 대상자 선정 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신청 불가)

- 전라북도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가구
- 소득·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단위 :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24년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복지부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전북형 기초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 단, 사적이전소득(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등)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함
 - ※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적용(암환자 제외)
 - 재산기준 : 일반재산 13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34백만원 이하
 - 자동차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 자동차 기준과 동일
(승용) 16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승합·화물) 10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 부양의무자 기준 : 폐지

※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4인이하 월834만원, 5인이상 885만원)인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생계급여 : 소득구간별, 가구원수별 지급

(단위 : 원)

생계급여액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A) 기준중위소득 40%이하		320,900	530,300	678,910	825,110	964,190	1,097,050	1,226,160
(B) 기준중위소득 40%초과~50%이하		160,450	265,150	339,450	412,550	482,100	548,530	613,080

- ※ (A)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보건복지부 생계급여액의 45% 수준
- (B) 기준중위소득 40%초과~50%이하 : (A) 대상자 금액의 50% 수준

- 해산·장제급여 : 출산시 700천원(쌍둥이 1,400천원), 사망시 800천원 지원

I 개 요

1. 추진 배경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21.10월)되었으나, 법정기준 미흡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이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보호대책 필요
- 저출산·고령화, 생활고를 겪는 고령 1인가구의 증가 등 전라북도 특성에 맞는 소득·재산기준을 마련하여 비수급 빈곤·위기가구 보호대책 추진
 - ※ 전라북도 고령인구 비율(2022. 8월) 22.9%. 전국 3위

2. 지원 개요

가. 지원대상

-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에 맞지 않아 법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서 발굴한 비수급 위기가구 등

나. 상담 및 신청

- 희망하는 복지급여 · 서비스를 확인하고 신청서·동의서(별지 제1-1호, 제1-2호 서식)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병행 신청 · 조사
 - ※ 맞춤형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신청자의 경우 ‘전북형 기초수급자’ 선택 불가
- 신청주의와 직권신청 병행
- 전북형 기초생계급여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노인일자리 참여 불가

다. 선정기준 : 소득·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단위: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24년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복지부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전북형 기초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단, 사적이전소득(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등)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일시금은 금융재산 적용(암환자는 일반재산)

- 재산기준 : 135백만원 이하
 - 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금융재산 : 34백만원 초과자 선정 제외
 -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 자동차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 의료 자동차기준과 동일
(승용) 1600cc 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승합·화물) 1000cc미만이며, 10년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 부양의무자 기준
 - 소득기준 : 없음
 - ※ 부양의무자가 고소득(4인이하 월834만원, 5인이상 885만원)인 경우 지원 제외
 - 재산기준 : 없음

라. 지원내용

- 생계급여 : 소득구간별, 가구원수별 지급

(단위 :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급여액							
(A) 기준중위소득 40%이하	320,900	530,300	678,910	825,110	964,190	1,097,050	1,226,160
(B) 기준중위소득40%초과~50%이하	160,450	265,150	339,450	412,550	482,100	548,530	613,080

- (A)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복지부 맞춤형 생계급여의 45% 수준
- (B) 기준중위소득 40%초과~50%이하* : (A) 급여액의 50% 수준
- ※ (B)기준중위소득 40%초과~50%이하 대상자에게 (A) 기준중위소득 40%이하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면, 소득역전 발생으로 (A)대상자 지원금액의 50% 지급

- 해산·장제급여 : 출산시 700천원(쌍둥이 1,400천원), 사망시 800천원 지급

3. 업무 처리 절차

상담 및 신청	조사	보장 결정	급여 서비스 제공	변동 및 사후관리	보장 중지
읍·면·동 주민센터 · 자격 및 서비스 안내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	통합조사(관리)팀 · 가구구성 확정 · 소득·재산 공적 자료요청 · 근로능력판정 · 조사정보 확인 및 처리	사업팀 · 복지대상자 선정 및 결정 처리	사업팀 · 급여지급	통합조사(관리)팀 · 인적/소득재산 변동 알림 · 누락·중복 서비스 추출	사업팀 · 부정수급자 급여 중지
· 신청주의와 직권신청 병행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맞춤형급여 통합신청) 우선, 기초연금 등 타 복지서비스 병행 접수	· 보장권자 - 소득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 일반재산(13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3천4백만원 이하) 자동차(국민기초 생계, 의료기준 준용) · 부양의무자 - 소득 : 없음 (단서조항 존재) - 재산 : 없음	· 근로무능력가구 : 연간 지속 지원 · 근로능력가구 : 6개월(연1회) ※ 1년 경과시 재신청 가능	· 생계급여 (A)기준중위소득 40%이하 : 복지부 맞춤형 생계급여의 45% 수준 (B)기준중위소득 40%초과~50%이하 : (A)급여액의 50% 수준 · 해산급여 70만원 · 장제급여 80만원	· 차상위 기초연금 등 타 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사후관리 · 타 법령 수급자 인정하되, 동일(유사) 복지급여지급 금지	· 선정기준 및 보장기간 경과자 급여중지 · 부정수급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절차 운영

※ 별도의 업무분장이 된 경우 업무 분장한 바에 따라 추진

II 신청 및 선정기준

1. 상담 및 신청

가. 급여신청 주제

- 지원대상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 보장권자 가구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급여신청과 동일, 별도 양식 없음)
- 신청주의와 직권주의 병행
 - 신규신청의 경우 직접신청과 본인 동의에 의한 직권신청 병행
 - 확인조사 등에 의한 기초생활수급 중지자는 본인 동의를 통한 직권신청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재조사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기간 1년 도래자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재신청·조사로 수행

- ♦ 부양의무자를 조사하지 않는 주거·교육급여 개별신청 시는 전북형 기초급여 병행신청 불가, 부양의무자를 조사하는 생계·의료급여 신청시 전북형 기초급여와 병행신청 가능
-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지자의 경우 전북형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은 중지된 지 3개월 내에 본인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하고, 3개월 초과 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신규신청과 병행하여 신청 가능

※ 신청 후 본인 취하 요청 및 비거주 확인시 조사중지

나.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

다. 신청 구비서류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구비서류
 - 신규신청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와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병행 신청 접수
 -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24p)」에 따라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수급권자의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 절차 안내 및 직권 신청 실시
 - ※ 긴급복지 생계지원대상자는 지원이 종료된 후에 전북형 기초보장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기간에는 신청 불가함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급여 탈락 후 재신청, 보장기간 1년 도래자 재

조사의 경우 전북형 기초보장제도 재신청 또는 재조사에 따른 동의서(별지 제1-2호 서식) 사용 가능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절차 생략 불가)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규 신청자의 경우**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서(별지 제1-1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시 동일한 서류 징구
- **3개월 이내 월별·정기 확인조사 등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 중지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에 따른 책정 제외자의 경우**
 - 대상자 동의에 의한 직권신청 및 기 제출 서류 미 징구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서(별지 제1-1호)
 - * 3개월 초과시에는 신규 신청자의 경우와 같이 별지 제1-1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시 동일한 서류 징구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탈락 후 1년 이내 재신청, 보장기간 도래에 따른 재조사의 경우**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재신청, 재조사에 따른 동의서(별지 제1-2호)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규신청의 경우와 동일하게 서류 징구(동의서로 대체 가능)

-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맞춤형급여 통합신청)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신청 병행 접수
- ※ 단, 현재 타급여 지원대상자(기초연금,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등)가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할 경우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연계신청 생략

라. 신청의 제한

- 세대주의 전라북도 주민등록 1개월 이후 신청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수급자는 지원이 불가하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위기사유와 기준 적합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중복 지원 가능
- ※ 국가지원사업 우선 적용
-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의 경우 지원 완료 후 신청 가능

마.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후 통합조사·관리부서로 송부

2. 보장의 단위

가. 가구단위 보장 원칙

나. 보장가구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보장가구의 범위 준용
- 세대주의 전라북도 거주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 제한
- 가구 범위 확정 절차
 - 세대주의 전라북도 전입 주민등록일 확인
 -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자(세대원)를 조회하여 일괄 등록
 - 제외할 가구원을 확인하여 삭제
 - 조사대상에는 포함되나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가구원 확인
- 가정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가구 특례 인정(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준용)
- 중증장애인에 대한 별도가구 특례 인정
 - 부모 집에 거주하는 30세 이상의 중증장애가 있는 가족 구성원 및 결혼한 자녀(사별 또는 이혼한 자녀 포함) 집에 거주하는 중증장애 부모(조부모 및 외조부모 포함)는 별도가구 인정
 - ⇒ 분리된 가구는 부양의무자로 전북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별도가구는 전북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충족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 급여)에서 별도가구로 인정받은 경우 나머지 비수급 가구는 전북형 기초보장 신청 대상이 아님을 유의할 것
 - 단, 연령과 관계없이 중증장애가 있는 가족 구성원이 형제자매 및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집에 거주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에 한하여 별도가구 인정
- 동일 보장가구의 세대원이 건강상의 문제로 타 시·도에 소재하는 병원 및 요양원에 입소한 경우 동일 보장가구로 인정
 - 입소료를 지불하는 시설에 입소한 경우 전북형 생계비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 ※ 단, 입소료가 전북형 생계비 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급 불가

3. 선정기준

가. 소득기준, 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나. 소득기준

- 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기준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 1인 증가시 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 부양비 부과제도 미적용
- ♦ 보장기관 확인소득, 사적이전소득 중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이자소득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 ♦ 그 외 소득의 인정 여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조사방법 준용

다. 재산기준

- 가구당 재산액 : 135백만원 이하(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부채)
- 기본재산 공제액 미적용
- 선정제외
 - 금융재산 3,400만원 초과
 - 단,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 포함
 - 소득환산율 100% 적용 자동차 소유자

라. 부양의무자 기준 : 폐지

※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4인이하 월834만원, 5인이상 885만원)인 경우 지원 제외

III 조사 및 보장결정

1. 조사 원칙

가.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 신고내용 확인 및 보장가구 구성 확정

나. 근로능력 판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 시 판정결과 적용

- 근로능력 없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18세 미만, 65세 이상
 -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중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가.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P.96~97)
- 나. 법률상 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으로 사회복지요원, 상근예비역은 근로무능력자로 인정함
- ※ 외국인 배우자는 수급자 보장가구원에서 제외하므로 근로능력판정 유무대상에서

제외함. 즉, 외국인 배우자가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나머지 가구원이 근로능력이 없고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책정 가능함

다. 근로능력상태 변경(능력→무능력)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후 근로능력상태 변경시(능력→무능력) 중병 서류(병원 진단서)를 첨부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근로무능력 판정가능하며, 심의시 보호기간 설정하여 심의토록 할 것
- 단,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에 의한 근로능력판정결과 근로능력 없음(유 → 무)으로 변동될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없이 “근로능력 없음”으로 변경 가능
- ※ 근로능력 판정 유예기간이 만료하였으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기간 미개최로 인하여 자격이 중지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심의를 개최하여 결정토록 함. 단, 결정시까지 자격 중지는 유예 함.

라. 공적자료 조회 요청 후 조회결과 확인 및 반영

마. 소득재산조사는 통합조사팀이 일괄 실시하고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

- 소득·재산의 변경내용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수정 조치

바.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 및 부채도 신청세대로 포함하여 적극 구제

※ 부채인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방식과 동일하며 공적자료 및 소명자료 제출이 어려울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사. 신규 신청자가 맞춤형급여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기준에는 적합하나 자활사업 등에는 참여하지 아니하고,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만 신청하는 경우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제한

2. 소득 조사

가. 선정 기준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

-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

$$\text{소득평가액} = \text{실제소득} - \text{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text{근로소득공제액}$$

나. 실제 소득 산정 시 다음의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함

-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사적이전소득 중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이자소득

다. 공적이전소득 및 그 외 소득 조사는 맞춤형급여 수급자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준용

3. 재산 조사

가. 재산의 종류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으로 구분

나. 재산가액 선정 기준은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적용하되, 변경 내용이 증빙자료 등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수정 가능

다. 금융재산의 산정 제외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 산정에 포함
- ※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적용(단, 암환자제외)

라.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제한

-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소유 시에는 전북형 기초보장 수급자 선정 불가 (자동차 소유기준은 국민기초생계·의료기준 적용)

<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사항 >

		2023년	2024년
다인·다자녀	승용 자동차	▲ 1,600cc 미만 *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원 미만	▲ 2,500cc 미만(7인승 이상) *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원 미만
	승합 자동차	▲ 1,000cc 미만 *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원 미만	▲ 소형 이하 승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원 미만
생업용 자동차		▲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의 경우) 1대 * 자동차 가액 50% 재산범위 제외 * 나머지 50%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의 경우) 1대 * 자동차 가액 100% 재산 산정 제외

마. 기타 산정 재산

- 기 산정된 재산을 처분(증여, 금융재산 감소 등)한 경우 처분(감소)한 재산의 가액에서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금액,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처분(증여)한 날로부터 3년 동안만 기타(증여) 재산으로 산정
- 단, 보장가구의 3개월내 처분한 재산은 필요시 증빙자료 등을 제출토록 하여 생활실태 및 재산은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음

바. 그 외 재산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준용

- 명의대여 재산은 불법사항이므로 재산공제 불인정
- 기본재산액 공제는 미적용
- 부채 차감 순서
 - 1순위 일반재산(주거용재산, 자동차 포함)
 - 2순위 금융재산
- 단, 재산기준에는 적합하나 부채차감 순서(일반재산→금융재산)에 따라 부채를 차감할 경우 금융재산 초과로 수급자 책정에서 제외(중지)되는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차감 순서 변경 가능

4. 부양의무자 조사

가. 부양의무자의 유무확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부양의무자 유무 및 가구원 확인
- 부양의무자 중 전북형 기초보장 수급자의 동일가구(보장가구)에 속하는 자를 제외한 부양의무자(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아들, 딸 등)를 확인
 - ※ 부양의무자 범위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적용
 - ※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4인 이하 월834만원, 5인 이상 885만원)인 경우 부양능력 있음으로 지원불가

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소득재산)및 부양여부 사실조사

-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되는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

※ 소득, 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

다.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기피 등의 사유 발생 시 적극적 발굴 지원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사실 확인을 통해 적극 발굴 추진
-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선정 조사 시 사실 확인하여 선보장 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3개월 이내)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183~185쪽〉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시장·군수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부양의무자가 제출하여야 할 각종 자료를 미제출할 경우라도 공적자료 조회 후 지방생활보장심의회 심의를 거쳐 맞춤형급여 수급자로 선정 가능

5. 보장 결정

가. 소득·재산조사 결과 및 기타 자격요건 조사확인 후, 선정기준 여부와 급여액 내용 결정

- 근로무능력가구, 근로능력가구로 구분하여 급여 지원
 - 근로무능력 가구 :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
 - 근로능력 가구 :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나. 근로능력가구의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주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보장기간 제한 : 6개월, 연1회

다.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 (서면 또는 온라인 가능)

- 서면통지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급여 결정 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
- 온라인 통지: SMS 통지

IV 근로능력 판정 및 자격 관리

1. 근로능력 판정

가. 조사방법 : 근로능력 판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 급여) 수급자

조사 시 판정결과 적용

나. 자격대상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및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로 구분

※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96~97쪽 참조

다. 근로능력판정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다음의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 2023년 기준 18세(2005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023년 기준 65세 (1958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이전 달까지
-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준용)
- 기타 법률상 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으로 사회복지요원, 상근예비역은 근로무능력자로 인정함
 - 복무확인서를 첨부하고, 복무기간 완료 후에는 근로능력 여부 판정

2. 근로능력 변경처리

가.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후 근로능력상태 변경(능력→무능력)

- 병원 “일반 진단서” 또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첨부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근로무능력 판정가능
- 다만, 근로능력에서 무능력으로 변경시 “나.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 기준에 해당할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없이 무능력자 처리

나.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후 근로능력가구 연장보호

- 근로능력가구 연장보호는 해당 가구의 생활실태조사서(서식 제5호)를 통해 연장보호가 필요할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장보호 가능
- 생활실태조사서에 가구구성원, 근로능력 유무,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 건강상태(질병유무), 주 소득원 및 월 수입액, 월 지출액 등 조사
 - ※ 필요시 관련 증빙서류(중독관리센터, 정신보건센터 등)를 요구하여 판단

○ 연장보호 심의대상

- 실업이나 미취업 등으로 생활이 여전히 어려운 경우
-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및 학원 수강 등으로 취업 준비중인 경우
- 질병으로 근로가 불가능하고 생활이 여전히 어려운 경우
- 동일 보장가구 내 가족의 질병 등으로 갑자기 일시적인 간병을 해야 하는 경우

V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1. 구성 및 운영

가. 구 성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지방생활보장위원회(소위원회 등)는 별도 구성 없이 시군에 구성되어 있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및 소위원회, 별도위원회를 이용함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위원회 등이 대체 가능

나. 운 영

- 매월 1회 이상 회의 개최(안전이 발생시)하며, 필요시 서면의결 활용
-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과 관련하여 개최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소위원회 등) 심의실적을 별도로 기록관리 할 것

※ 기타 위원회 개최 및 운영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준용하여 처리함

2. 위원회 기능

가. 기 능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사·선정 등에 관한 사항 및 보장비용징수 제외 등에 대한 다음 사항을 심의 함
 -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기피하고 있는 가구의 생활실태로 보아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판단
 - 사실상 재산이 국·공유지에 준하여 활용되고 있어 조사결과 소유자의 처분 및 활용이 곤란한 재산 판단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자동차로 인해 보장이 곤란한 가구 일반재산으로 인정하는 경우
 - 재산기준에는 적합하나 부채차감 순서(일반재산→금융재산)에 따라 부채를 차감할 경우 금융재산 초과로 수급자 책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한 판단
 - 가구특성이나 생활 실태로 보아 수급자 가구가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징수제외(감액포함) 및 결손 처분에 관한 경우
 - 보장 가구내 장애 아동(만 18세미만) 및 치매 노인을 간병·보호해야 할 경우 가족 구성원 1인을 근로무능력자로 판단이 필요한 경우
 - 수급자 본인명의 통장개설이 어려운 경우 혈족 이외 제3자 중 이해관계자 (실제 수급자를 보호, 지원하는 자)의 계좌로 설정하는 경우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이혼전 숙려기간 포함)에 있다고 판단한 경우
 - 배우자의 폭력, 학대로 인하여 주거를 달리고 있는 경우

VI 급여의 실시

1.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2. 생계급여

(단위 : 원)

생계급여액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A) 기준중위소득 40%이하		320,900	530,300	678,910	825,107	964,190	1,097,050	1,226,160
(B) 기준중위소득 40%초과~50%이하		160,450	265,150	339,450	412,550	482,100	548,530	613,080

※ (A)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복지부 생계급여액의 45% 수준

(B) 기준중위소득 40%초과~50%이하 : (A) 대상자 금액의 50% 수준

* 7인이상도 7인으로 지급

3. 해산·장제급여

○ 해산·장제급여 : 출산시 700천원 / 사망시 800천원

※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263~266쪽 준용 지급

4. 급여의 지급

가. 급여 기준일(매월 30일)

나. 지급방법 : 행복e음 연계 처리

- 소득·재산, 가구원 등 변동사항 반영 후 매월 급여 지급자료 생성
- 급여액을 확정하고 회계부서로 e-호조를 통해 지급 의뢰하여 급여 이체 및 지급

다. 급여 지급기준

- 급여 신청일이 포함된 달의 급여를 전액 지급하되, 급여지급 기준일을 초과하여 선정된 가구는 그 다음 달에 소급하여 2개월분의 급여 지급
- 근로능력가구의 급여는 보장기간(6개월)으로 한정
- 기초생활보장수급 중지자로서 전북형 기초보장수급자에 해당되는 경우
 - 중지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달 1일을 급여신청일(급여개시일)로 하며,
 - 중지일이 포함된 달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북형 기초보장수급자를 신청하면 신청일을 급여신청일(급여개시일)로 함(단, 중지일이 1일인 경우 다음달 1일을 급여신청일로 함)

※ 기초생활보장급여 중지자의 경우 전북형 기초보장급여 신청은
 - 중지된 지 30일 내에 본인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하고,
 - 30일 초과 시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신규신청과 병행하여 신청해야 함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변경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지급하고,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이중 지급된 급여는 환수 조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신청할 수 없으나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가능함

- 보장기간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서 없는 가구로 변경 시 최초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간 지원 가능(※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필요)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동시 신청을 통해 변경할 경우에는 재신청일로부터 1년 보장, 근로능력가구는 6개월 지원 후 중지하고 재신청 기준 적용 처리
- 그 외 급여 지급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기준 준용

5. 급여의 변경·중지

가. 변경 사유: 소득·재산, 근로능력, 가구원, 거주지 변동 등

나. 변경 내용: 보장구분, 급여액 등

다. 변동사항 적용 결과 선정기준 초과자에 대하여 급여 중지

라. 전출

- 전라북도 내 타 시군 전출 시 : 전출한 달까지 급여 지급 후 전입지 통보
- 타 시·도 전출 시 : 전출한 달까지 급여지급 후 중지

마. 변경내용 및 중지내용을 서면 통지 원칙<별지 제3호 서식>

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가 이중 지급된 경우 지급된 보장급여 환수 조치

사.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보호 중이라도 맞춤형복지(생계·의료급여) 기준 적합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우선 실시

6. 계좌 관리

가.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의 계좌로 입금하며, 급여계좌 수는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함.

※ 압류방지 전용통장 지급 불가

나. 수급자 중 아래와 같은 사항인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제3자 중 이해관계자(실제 수급자를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자)의 계좌로 급여지급 가능

- 친인척이 없는 미성년 단독가구 또는 무연고 신원확인 곤란자 등 수급자 본인 명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이혼전 숙려기간 포함)에 있다고 확인한 경우
- 배우자의 폭력, 학대로 인하여 주거를 달리하고 있다고 확인한 경우
 - ※ '2023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 계좌관리 나. 급여계좌 예외(p.243) 준용
 - ※ 제3자는 수급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3촌이내 방계혈족 이외의 자를 말함

다. 장제급여는 실제 장제를 직접 치른 제3자 또는 기관(의료기관 등)에 지급할 수 있음

라. 급여계좌 해지 등의 사유로 계좌변경이 필요할 경우 변경가능 (별지 제4호 서식 참조)

VII 자격관리

1. 변동 및 사후관리

가. 수급자 거주지, 가구구성, 근로능력, 취업상태, 소득재산 등 자격유지 및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사항을 관리

- 출생·사망 등 보장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변경(감소)이 없는 가구원 변동 시에는 전체(잔여)가구에 대한 가구 재구성 후 소득평가액을 재산정 하고, 결혼 등 보장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변경(증가)이 있는 가구원 변동 시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새로 받아 재판정 실시

나. 확인 방법

- 일반적인 확인 : 신고 및 급여변경 신청, 보장기관의 재조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확인¹⁾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자로 선정하여 사후관리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재조사에 의한 사후관리
 - ※ 보장기간 1년 도래 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재신청하여 재조사
- 타급여(기초연금 등) 재조사에 의한 사후관리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년 도래자 신규신청/조사 결과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확인 발급,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타법의료” 대상자의 재조사 결과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적합 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보장(전북형 기초생활보장급여 중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준부적합,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준 적합 시 계속 보장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준 부적합 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급여 중지

○ 상담·가정방문 등을 통한 확인

- 재신청 조사(일제조사) 제외자는 보장가구의 소득, 재산 변동사항 등을 자진 신고토록 연 1회 이상 안내문 발송

다. 변동사항의 처리방법

- 보장기관에 의하여 변동사항이 확인된 그 달에 변동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발생 월 확인이 어려운 경우 확인월 기준으로 적용 함
- 소득재산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행복e음을 통해 통보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장기관에 의하여 변동사항이 확인된 그 달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 행복e음에 의해서 통보되는 소득·재산의 변동사항은 매월 15일까지 반영

라.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부정수급에 대한 보장 비용 징수(환수) 절차

- 부정수급에 대하여 담당자가 인지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등록한 후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급중지 처리

1) 각 항목별 주기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자료에 대해서만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통보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안전상정 후 결손처분

2. 근로능력이구의 사후관리

가. 근로능력이구의 보장기간은 6개월, 연 1회(최초 급여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재신청 가능)로 제한

예) 2023.1.1. 급여신청, 2023.1.25. “근로능력이구” 보장결정

☞ 보장기간은 6개월(2023.1.1.~2023.6.30), 급여 재신청은 2024.1.1. 이후 가능

구 분	보장기간(6개월)	재 급여신청일	비고
근로능력이구	2023. 1. 1. ~ 2023. 6. 30.	2024.1.1. 급여 재신청 가능	

※ 6개월 보장하되 재신청일은 익년도 1월 1일

나. 근로무능력 유효기간 만료 도래자에 대한 처리방법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년 도래 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재신청하여 재조사하므로 근로능력판정 또한, 「근로능력판정사업 안내」의 판정절차와 판정시기에 따라 동일하게 진행
- 근로무능력 상태가 지속되고 있지 않거나, 근로무능력 유효기간 만료일 까지 진단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대상자의 근로능력 상태를 “있음”으로 변경하여 6개월 지원 후 보장 중지

3. 재신청 도래자에 대한 처리방안

가. 목적 : 수급 자격 여부 및 급여 적정성 확인

나. 시기 : 매월 급여개시일(또는 서비스시작일) 기준 1년 도래시

※ 조사기간 소요에 따른 급여지급 공백 최소화

다. 대상 : 전북형 1년 지원가구 및 6개월 지원 후 중지 예정 근로능력이구

→ 관내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공문으로 사전 통보(즉시)

라. 방법 : 재신청 조사 안내

- 안내문 발송(전화, SMS 및 방문 포함) 실시, 최소 2개월전 안내
- 안내문 양식 : 첨부물 참고, 시군별 수정 후 사용

- 안내문 2회 발송 후에도 재신청 없을 경우 자격 중지(관리 철저)
- 소득·재산 및 인적 변동사항은 변동 “발생월” 기준 적용
(단, 발생월의 정보 확인이 곤란한 경우 “확인월” 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자격 중지
 - 원칙 : 조사 중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급 후 국민기초수급자로 책정되어 중복 지급될 경우 환수 조치
 - 예외 : 소진 등으로 환수 불가할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후 면제 처리
- 자격 중지자는 확인 후 익월부터 자격정지
-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 등 행정절차 수행
- 그 외 조사방법은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준용하여 처리

4. 보장비용 환수

가. 부정수급에 대한 보장 비용 징수(환수) 절차

- 부정수급에 대하여 담당자가 인지한 경우 행복e음 내 “환수 상계 처리” 부정수급으로 등록한 후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급 시 상계처리 또는 환수 조치

나.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맞춤형급여 수급자로 전환된 경우

- 조사기간을 감안하여 조사결정 전까지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생계급여는 우선 지원
- 맞춤형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이중 지원된 급여에 한하여 환수
 -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원하고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에서의 생계급여 환수 조치
 - 단, 이를 이미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대상자에게 부득이한 사유로 환수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환수 면제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사회보장급여의 환수) ②보장기관의 장은 수급권이 없는 자에게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거나 그 변경·중지로 인하여 수급자에게 이미 제공한 사회보장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이미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소득평가시 부양비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은 별도 징수하지 않음

⇒ 기타 보장비용 징수 및 결손처분 절차 등은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준용

VII 서 식

1-1.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신청서

1-2.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신청 또는 재조사에 따른 동의서

2. 해산장제급여 지원 신청서

3. 전북형 기초생활보장급여 결정(변경·중지) 통지서

4. 복지급여계좌 변경신청서

5.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생활실태 조사서

별지 제1-1호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신청서											처리기간
☐ 신규신청 ☐ 재신청											60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세대주와 의 관계		전화번호			
		주 소		전라북도 전일일 (세대주기준) : 년 월 일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 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동거여부 (미동거사유)		기타 복지급여 수급 여부 (○, ×)	
		본인								긴급지원 한부모 기타 ()	
부양 의무자 2)		수급자와 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비고	
급여 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 ³⁾	
										※대표계좌기재	
통제방법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서면 ☐ 기타()							
위와 같이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를 제공받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타 복지급여 신청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소득·재산·금융정보, 부양의무자 정보 등)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전북형 생계급여 수급시, 정부일자리 노인일자리 참여는 불가합니다.											
00 시장. 군수 귀하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추가제출서류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 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부양의무자 동의서 1 부											
제출하는 곳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2) 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동일보장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 기재

별지 제3호

[앞면]

전북형 기초생활보장급여 ☐ 결정 ☐ 변경·중지] 통지서

신청인/세대주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신청내용	신청구분			급여·서비스내용				

비고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심의 결과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 관계	급여대상자	생년월일	보장구분		보장급여	급여개시일
			근로 무능력 가구	근로 능력 가구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을 초과하거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격이 중지되거나 급여가 감소 될 수 있습니다.

3. 근로능력가구의 경우 연 1회에 한해 6개월 동안 지원이 가능합니다.

☐ 부적합

신청내용	보장구분			급여·서비스내용		
------	------	--	--	----------	--	--

부적합사유

☐ 소득기준 초과 ☐ 재산기준 초과 ☐ 부양의무자 부양기준 초과
☐ 기타()

안내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가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장애, 질병, 거동불편 등 개인 또는 가구·여건 등의 변화 등의 변동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보장기준에 적합할 시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을 제공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중지

변경사유	일자	년월일	부터	내용
	경사유		☐ 소득·재산·근로능력 변동	
☐ 가구원의 사망·출생·현역입대·교정시설 수용 등의 가구원 변동				
☐ 가구원의 전출입 등 거주지 변동 등				
☐ 기타()				
중지사유		☐ 사망		
		☐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 초과		
		☐ 부양의무자의 부양사실 확인(부양기준 초과)		
		☐ 보장시설입소, 교정시설 수용 등 주거실태의 변동		
		☐ 보호대상자의 급여 중지 요청		
		☐ 보장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기타()				

[뒷면]

비고

※ 처리기한 경과사유 등

1.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변경)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해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수급기간 중 인적사항 및 소득·재산 변동, 지급정지 사유의 소멸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담당자: 직급성명

문의 전화번호

시장, 군수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25 -

- 26 -

별지 제4호

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급여 지급 계좌	현 행	금융기관		예 금 주	
		계좌번호			
	변 경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위와 같이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대하여 계좌변경을 신청하오니, 현재 지급받고 있는 급여를 위 변경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귀하					
구비서류	급여통장 사본 1부. (압류방지용 통장 사용 불가)				

별지 제5호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실태조사서				
1. 조사일시				
2. 조사대상자				
3. 조사장소	*조사대상 집주소 등 기재			
4. 조사목적				
5. 조사내용	*가구구성 형태 및 근로능력 유무,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 건강상태(질병 유무), 주 소득원 및 월 수입액, 월 지출액 등 조사내용 포함			
6. 조사결과				
7. 조 사 자	직급		성명	(서명)

IX. 부 록(1)

전북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추진 경과

- 시군 사회복지공무원 간담회 : '18. 6월
- 기 시행 시도(대구, 광주) 벤치마킹 : '18. 7월
- 보건복지부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 '18.10월
- 전라북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정 : '18.11월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예산확보(10억) : '18.11월
- 복지부 및 사회보장정보원 관계자 회의 : '19. 2월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시스템 구축(행복e음연계) 용역심사 : '19. 3월
- 지침마련을 위한 시군 사회복지공무원 간담회 : '19. 5월
- 지침변경을 위한 시군 사회복지공무원 간담회 : '19. 7월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시스템 구축 용역 계약 : '19. 8월
- 지침변경을 위한 시군 사회복지공무원 간담회 : '19. 10월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시스템 구축 완료 : '19. 11월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시스템 교육(시군, 읍면동) : '19. 11월
- ' 20년 지침마련을 위한 시군 사회복지공무원 간담회 : '19. 12월
- ' 20년 1회 추경 예산 추가 확보(8억원) : '20. 3월
- ' 21년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사업방향에 대한 시군의견 조사 : '20. 9월
 - 의견결과 : 7개 시군 사업종료, 7개시군 선정기준 변경 지속추진
- ' 21년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사업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 '20. 10월
 - 사업기준 변경하여 지속 추진 (전북연구원 연구기획부장 이중섭 박사)
- ' 21년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소득기준 완화(30%이하→ 40%이하) : '20. 11월
- ' 22년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소득기준 완화(40%이하→ 45%이하) : '21. 12월
- ' 23년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소득기준 완화(45%이하→ 50%이하) : '23. 1월